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7. 6. 22 선고 2016가합37075 판결 [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피 고 2. B

변론 종결 2017. 5. 18

판결 선고 2017. 6. 2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에게 100,000,000원을, 원고 B에게 70,000,000원을, 원고 C에게 60,000,000원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들의 주장 요지

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리점 보증금(원고 A : 100,000,000원, 원고 B : 70,000,000원, 원고 C : 60,000,000원)을 지급하였는데, 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가 위 대리점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원고 A로부터 100,000,000원, 원고 B로부터 70,000,000원, 원고 C로부터 40,000,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, 원고 C로부터 보증금으로 20,000,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.

나. 판단

1)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5, 7내지 10호증, 을 제1내지 4, 7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증인 E,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) 피고는 2014. 6. 17.경 원고 A와 사이에 G 총판 계약을, 2014. 12. 10.경 원고 B와 사이에 H 공식대리점 계약을, 2015. 3.경 원고 C와 사이에 I 대리점 계약(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다.

나)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피고에게, 원고 A는 합계 100,000,000원을, 원고 B는 합계 70,000,000원을, 원고 C는 합계 60,000,000원(그중 20,000,000원의 경우, 원고 C는 피고에게 지급할 위 보증금을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J의 지시로 E에게 지급하였고, 이후 원고 C는 그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보증금 지급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이에 피고의 직원인 F은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 첫 장 상단에 "보증금 이천만원 완불"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)을 각 지급하였다.

다) 그러나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에 따라 오토바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끝에, 결국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, 원고 A에게

보증금 100,000,000원을, 원고 B에게 보증금 70,000,000원을, 원고 C에게 보증금 60,000,0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미리판사 고범 진판사 황용남